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8
----------	-----

2023. 10. 18.(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0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0월 17일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창복 산림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녹색제품 인증과 생산·유통 활성화 지원 등 녹색제품 소비 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민간단체에게 재위탁 하고자 2015. 3. 27. 개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위탁개요

- 기 간 : 2024년 (1년간)

※ 단,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위탁방법 : 재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후 위·수탁협약에 의함

- 위탁사무 :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관련규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4조의2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가. 민간위탁의 필요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4조의 2항에 따라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충청북도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이 적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녹색제품 사용 정착을 위해 2014. 8. 27.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공모로 선정된 ‘생태교육연구소 터’에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2023. 12월말까지 운영해 왔음.

(최초) 2014. 8. 17 ~ 2016. 12. 31 / (2차) 2017. 1. 1 ~ 2017. 12. 31

(3차) 2018. 1. 1 ~ 2020. 12. 31 / (4차) 2021. 1. 1 ~ 2023. 12. 31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률적 검토와 타 시 도 사례 등으로 미루어 민간위탁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타 시·도 민간위탁 운영 현황>**

구분(개소)	경기안산(1)	부산(1)	제주(1)	경북(1)	대전(1)
개소일	2013. 5. 27.	2013. 6. 27.	2014. 7. 8.	2014. 8. 27.	2015. 8. 13.
위탁기관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사)에코언니야	제주환경 운동연합	생터교육 연구소‘터’	대전주부 모니터링봉사단
구분(개소)	세종(1)	광주(1)	인천(1)	경남(1)	서울(1)
개소일	2017. 11. 27.	2018. 7. 26.	2018. 8. 27.	2021. 6. 30.	2021. 11. 4.
위탁기관	세종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광주소비자 공익네트워크	인천녹색 소비자연대	경남YMCA	(사)한국녹색구매 네트워크

○ 지원센터 운영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천4백과 도비 4천4백 포함하여 총 8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개정)에 따라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임.

○ 다만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어 총사업비가 이전에 비해 44%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됨.

※ 23년도 사업비 : 2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따라서 예산에 맞추어 꼭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위탁기관 선정이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타 시·도의 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충분히 분석해 위탁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임.

○ 또한, 평가 실적이 정량평가 추진에 치중되어 있어 정성평가 달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18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를 적극 추진해야 하고,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의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및 국민은 녹색제품을 생산,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녹색제품 인증과 생산·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녹색제품 소비 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필요
-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관련 제반업무를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려고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4년 (1년간)

※ 단,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나. 위탁사무

- 민간부문의 녹색제품 인증 컨설팅 및 인증 지원
-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및 녹색매장 관리 등

다. 소요예산 : 8,800천원(국비50, 도비50)

라. 수탁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바.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사. 민간위탁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아.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년 12월

### 3. 참고사항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예(예정) 따라 수탁기관의 신청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국비 보조금 미교부 또는 보조금액 변동시 도비 보조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4.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7조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 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 참고자료

#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 사업목적

- 녹색제품 생산·소비 확대를 주도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역 내 녹색제품 인증 지원 및 수요처와의 연결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적 지역 경제 활성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비 : 88,000천원(국비50, 도비50)
  - 산출근거 : 88,000천원×1개소 = 88,000천원
- 사업량 :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1개소
- 사업내용 : 녹색제품 인증지원 및 컨설팅,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녹색매장 관리 등
- 시행주체 : 공모추진 예정(기존센터 '23년 계약기간 종료)

#### < 센터 지정 현황 >

- ▶ 지정기관 :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70, 302호)
- ▶ 지정기간 : '21. 1. 1. ~ '23. 12. 31.
- ▶ 지정방법 : 공모
- ▶ 사업비 : 200,000천원(국비50, 도비50)

### □ 향후계획

-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공모) : ~'23. 12.
-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 '24. 1. 1. ~ 12. 31.